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·운영 및 학부모교육
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·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66
----------	-----

2023. 4. 28.(금)
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자: 김현문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: 2023년 4월 11일

다. 회부일자: 2023년 4월 11일

라. 상정일자: 2023년 4월 20일

(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김현문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학교 학부모회 운영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
학부모회 회장의 연임 규정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한 차례로 제한된 학부모회 임원의 연임 규정과 관련해 충청북도 내 농·산촌지역 작은학교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에 따라 구성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함.(안 제8조제3항)

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박영균)

가. 조례 개정이유

- 학부모회는 학교에서 자생적으로 구성·운영되는 단체이지만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교교육 발전 및 학교운영과 관련해 다양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.

나. 주요 내용

- 현행 조례 제8조(임원의 임기)에서는 ‘**학부모회의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**’ 로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음.
- 이는 일부 학교에서 특정 학부모가 장기적으로 회장 및 임원을 맡으며 발생하는 학교 내 세력화 우려 및 임원 선거전 과열로 인한 파행¹¹⁾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임.
- 그러나,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¹²⁾ 속에 인구 유입요인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·산촌지역 작은 규모의 학교들은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학부모회 활동 참여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임.

11) ‘공정성 논란에 초등학교 학부모회장 선출 연기’ (경기도 수원시) / 중부일보 (23.03.15) 보도

12) ‘충청권 초등학교 17곳...신입생 0명 : 충북 8곳·충남 9곳’ / 충청타임즈 (23.04.12) 보도

- 이에, 충청북도 농·산촌지역에 소재하는 학교 중 학생수 6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인 초·중학교에서는 학부모회 회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음.

【첨부자료 1】

충청북도 농·산촌지역 작은학교 현황

구분	초등학교	중학교	합계
초·중 전체 학교(교)	268	128	396
농·산촌지역 작은학교(교)	98	42	140
농·산촌지역 작은학교 비율(%)	38.28	32.81	38.38

학부모회 설치 대상 학교 중 충청북도 농·산촌지역 작은학교 현황

구분	초	중	고	특수	각종	합계
초·중·고·특·각종 전체 학교(교)	268	128	82	10	5	493
농·산촌지역 작은학교(교)	98	42	-	-	-	140
농·산촌지역 작은학교 비율(%)	38.28	32.81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29.11

※ 자료제공 : 충청북도교육청 인성시민과

- 특히, 타 시도교육청의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조례 가운데 ‘강원도교육청과 전라북도교육청, 충청남도교육청’의 경우 학부모회장의 임기와 관련된 조항에 ‘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’는 내용을 담아 학교 현장의 실정에 맞는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.

【첨부자료 2】

학부모회 회장 연임 규정 관련 시도교육청 조례 현황

조례명	조항 / 조문 내용
강원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·운영 조례	제8조(임원의 임기) ② 학부모회 임원의 연임 규정은 해당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.
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제8조(임원의 임기·자격) ② 학부모회 회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.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「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는 학부모회 회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	제8조(임원의 임기 및 자격) ② 학부모회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단, 새로운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1회 연임할 수 있다.
전라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	제8조(임원의 임기·직무·자격) ② 학부모회의 회장의 연임규정은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.

조례명	조항 / 조문 내용
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	제8조(임원의 직무 등) ④ 임원의 자격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. 다만, 학생의 졸업으로 학부모회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가 임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.
전라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조례	제8조(임원의 임기) ③ 학부모회의 회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. 다만, 학부모회의 회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중임 제한자도 회장이 될 수 있다.
서울, 부산, 인천, 대전, 울산, 세종, 경기, 광주, 제주 * 대구 : 관련 조례 없음	- 한 차례만 연임 / 중임 - 울산 :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음. 단, 신설 학교에 최초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1년 이상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할 수 있음.

○ 이번 개정안은 학부모회장 등의 선출과정에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농·산촌지역 작은학교의 경우 입후보자 부족으로 인해 구성 과정에서

위축될 수 있는 학부모회의 위상 및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.

다. 종합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농·산촌지역 작은학교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, 학교 학부모회 운영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- 주요 내용과 구성 체계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며 「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」과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 및 집행부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요지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:

-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·운영 및 학부모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·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·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「충청북도 농·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는 학부모회 회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임원의 임기) ①·②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8조(임원의 임기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「충청북도 농·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는 학부모회 회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.</u>

관계 법령

□ 지방자치법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

가. 어린이집·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·운영·지도

나. 도서관·운동장·광장·체육관·박물관·공연장·미술관·음악당 등 공공교육·체육·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
다. 지방문화재의 지정·등록·보존 및 관리

라. 지방문화·예술의 진흥

마. 지방문화·예술단체의 육성

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2. 4. 20.] [법률 제18841호, 2022. 4. 20., 타법개정]

제20조(관장사무) 교육감은 교육·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

1.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

2.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

3.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

4.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

5. 학교,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·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

6.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
7. 과학·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
8. 평생교육, 그 밖의 교육·학예진흥에 관한 사항
9. 학교체육·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
10.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
11. 교육·학예의 시설·설비 및 교구(敎具)에 관한 사항
12.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사항
13. 특별부과금·사용료·수수료·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
14. 기채(起債)·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
15.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한 사항
16.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
17. 그 밖에 해당 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

□ 교육기본법

[시행 2022. 3. 25.] [법률 제18456호, 2021. 9. 24., 일부개정]

제5조(교육의 자주성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,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학교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, 교직원·학생·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.

제13조(보호자)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.

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,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□ 충청북도 농·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

[시행 2017. 3. 17.] [충청북도조례 제4010호, 2017. 3. 17., 타법개정]

제2조(용어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<개정 2017.3.17.>

1. “농·산촌”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.
2. “충청북도 농·산촌지역에 소재하는 작은학교”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학생수 60명 이하 또는 6학년 이하인 초·중학교를 말한다.